



제 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체육도시 지정·지원 등〉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73호)

2026.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체육도시 지정·지원 등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11. 26.
3. 회 부 일: 2025. 11.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 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더불어 스포츠 산업의 개발 등을 통한 체육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육도시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 체육의 진흥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장의2 제43조의 3부터 제43조의6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체육도시 지정·지원 등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체육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체육도시심의위원회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도시를 지정·지정취소·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장의2 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6까지 신설 등).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5장의2 체육도시의 지정 및 지원</u> <u>제43조의3(체육도시심의위원회 설치)</u> ① <u>체육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체육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② <u>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u> 1. <u>체육도시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u> 2. <u>제43조의4에 따른 체육도시 조성계획의 심의 및 추진실적 평가, 예비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및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u> 3. <u>지정된 체육도시의 지원과 관련된</u>

<신 설>

사항

4. 그 밖에 체육도시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4(체육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체육 관련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
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체육
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특
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체육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
다.

③ 체육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
자치단체는 체육도시 조성계획(이하
“체육도시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으로부터 체육도시 조성계획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
치단체는 승인받은 체육도시 조성계
획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1
년 동안 예비사업(이하 “예비사업”

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체육도시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육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체육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체육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체육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체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체육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예비사업의 기간이 연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도시 지정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⑧ 그 밖에 체육도시 조성계획의 승인, 예비사업의 실시 및 기간 연장, 체육도시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신 설>

제45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5(체육도시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도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도시로 지정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받은 체육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정된 체육도시가 지역여건 등 환경변화에 의하여 체육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도시 조성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그 밖에 체육도시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6(체육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제4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체육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5조(청문) -----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 1. ~ 4. (현행과 같음) 5. <u>제43조의5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체육도시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u>
--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여러 시책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특화 스포츠 기반을 확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개정안은 체육도시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체육도시 지정 및 지원 등 체육도시 지정·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으로, 체육도시 지정 사업의 안정성 확보¹⁾, 체육도시 지정을 통한 지역 특화 체육 프로그램의 개발·지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개정안은 여러 도시 지정제도 근거 법률²⁾ 중 문화도시 지정 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과 가장 유사한 조문 구조를 띠고 있음.

1) 현재 체육도시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세부사업 ‘스포츠산업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특화 스포츠기반 조성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문화체육관광부). 구체적 사항은 [참고자료1] 체육도시 지원 관련 유사 사례 참조.

2) [참고자료2] 도시 지정제도 관련 유사 입법례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도시 지정 관련 조문]

조문내용
제2조(정의)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함
제14조(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①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체육도시’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체육도시 지정 시 법 해석상 불명확함을 줄일 수 있고, 법률 개정에 따른 효과, 재정 수요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체육 진흥과 지역 발전을 위한 체육도시 지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스포츠도시를 지정하여 지역 스포츠 활성화 및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25.2.20.)과 정책목표, 수단, 대상 등이 유사하여 중복입법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는 체육도시 지원 시 기 지원 중인 엘리트 훈련, 스포츠

과학 및 국제대회 유치 지원 등 스포츠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체육도시심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이므로, 신설 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³⁾에 따라 법령에 존속기한(최대 5년)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75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참고자료 1] 체육도시 지원 관련 유사 사례 - 지역특화

스포츠기반 조성 사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개요

- 사업명: 지역특화 스포츠기반 조성('24년 사업명 변경) *2017년~
- 지원방법: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규모: 개소당 기금 5억원 지원(기금:지방비 5:5 매칭)
 - (23년) 4,035백만원, (24년) 4,035백만원, (25년) 1,535백만원 (26년) 1,535백만원
- 지원내용: 지역특화 스포츠 이벤트(대회) 등 프로그램 개발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연차평가 후 최대 3개년 지원

□ 최근 3개년 지원현황(2023~2026)

사업명	연도	지자체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내용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2023	부여군	500	세계유산과 함께하는 카누여행
		수영구	500	광안리 SUPrise 스포츠관광 특화
		포항시	500	포항바다 & 포항운하 낭만의 길
		영덕군	500	영덕특화 풋볼트립
		울주군	500	울주 트레일 페스타
		단양군	500	수상스포츠의 메카"단양 구경 가자"
		익산시	500	승마관광 메카도시
지역특화 스포츠기반 조성	2024	부안군	500	마린 어드벤처(Marine Adventure) 부안
		단양군	500	수상스포츠의 메카 "단양 구경가자"
		울주군	500	울주 트레일 페스타
		익산시	500	승마관광 메카도시 익산
		부안군	500	새만금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관광
		신안군	500	플로피아 1004섬 신안 스포츠관광 축제
		영암군	500	영암 모터피아 스포츠 관광 특화사업
		철원군	500	철원 DMZ 로드 스포츠특화 사업
		태백시	500	Hi-High 레전드와 함께하는 산악스포츠
	2025	영암군	500	영암 모터피아 스포츠 관광 특화사업
		철원군	500	철원 DMZ 로드 스포츠특화 사업
	2026*	태백시	500	Hi-High 레전드와 함께하는 산악스포츠
		철원군	500	철원 DMZ 로드 스포츠특화 사업

* '26년 1개소 신규 선정 예정

[참고자료 2] 도시 지정제도 관련 유사 입법례

근거법	지정 형태	주요 내용
지역문화 진흥법	문화도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u>문화도시심의위원회</u> 운영 - 문화도시 지정, 취소, 변경 등 ○ 지정 절차 - 지방자치단체: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조성계획 작성·신청 (*지방자치단체: 시·도·시·군·자치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 시 1년간 예비사업 실시 *1차례 예비사업 연장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비사업 평가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 지정도시에 대한 <u>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u>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교육도시	○ 환경부장관 소속 <u>환경교육위원회</u> 운영 - 환경교육도시 지정 등 ○ 지정 절차 - 지방자치단체: 환경교육 활성화 계획 등 작성·신청 (*지방자치단체: 시·도·시·군·자치구) → 환경부장관: 위원회를 거쳐 지정(<u>지정기간: 3년</u>) ○ 지정도시에 대한 <u>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u>
청년기본법	청년친화도시	○ 지정 절차 - 지방자치단체*: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국무총리에게 서류 제출 (*지방자치단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 국무총리가 지정(<u>지정기간: 5년</u>)
양성평등 기본법	여성친화도시	○ 지정 절차 - 지방자치단체*: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여가부장관에게 서류 제출 (*지방자치단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 여가부장관이 지정(<u>지정기간: 5년</u>) → 기간 만료 전 <u>재지정 신청 가능</u>
평생교육법	평생학습도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 지정 절차 -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 평생학습도시/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지원 가능 (*지방자치단체: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 → 평생학습도시의 경우 <u>재지정 가능</u>